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7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개호 · 안도걸
주철현 · 김동아 · 김용민
박지원 · 최혁진 · 위성곤
양부남 · 김문수 · 정동영
소병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.

현재 선전물은 첩부·게시·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.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.

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,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,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.

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·시·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, 사회적기업·중소기업·여

성기업·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1조제7항제6호 중 “第276條(選舉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)의”를 “제276조(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)제1항의”로 한다.

제2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施設物을”을 “시설물(이하 이 조에서 “선전물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·시·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,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전물등의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생략)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第276條(選舉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)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者</u> ⑧ ~ ⑫ (생략) 第276條(選舉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) 選舉運動을 위하여 宣傳物이나 <u>施設物을</u> 첩부·게시 또는 設置한 者는 選舉日후 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276조(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)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 ⑧ ~ ⑫ (현행과 같음) 第276條(選舉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) ① ----- ----- <u>시설물(이하 이 조에서 “선전물등”이라 한다)을</u> ----- -----. ② <u>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·시·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</u>

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,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자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전물등의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